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1-0162호(2021.0506)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중 벽지의 안전기준 개정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였다.

❖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벽지)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취지
 - 벽지의 적용범위 및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보완
- 개정내용
 - 점착시트의 종류에 폼블럭벽지를 포함
 - 중금속 (납, 카드뮴) 및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추가
- 총 납 함유량, 총 카드뮴 함유량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라 시험하며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시험방법은 KSM 1988에 따라 진행
- 상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 요청
 - 가. 제출기한 : 2021.7.5 (월)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 (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23(벽지 및 종이장판지) 신규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벽지란 실내의 벽 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를 포함한다. 종이장판지한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생략) <신 설> 3. 안전요건 3.1 벽지 3.1.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table><tr><th>항 목</th><th>규 정</th></tr><tr><td>폼알데하이드방출량 (mg/l)</td><td>2이하</td></tr><tr><td><신 설></td><td><신 설> . . .</td></tr><tr><td>내황화성</td><td>4급이상</td></tr><tr><td>난 연 성</td><td>◦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td></tr><tr><td>프탈레이트 가소제</td><td>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td></tr></table> 비 고 1.~6.(생략) <신 설> 3.2 장판지(생략) 4. 시험방법 4.1 벽 지 4.1.1 시험의 일반조건~4.1.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생략) <신 설> 4.2 장판지(생략) 5. 검사방법~6. 표시(생략)	항 목	규 정	폼알데하이드방출량 (mg/l)	2이하	<신 설>	<신 설> . . .	내황화성	4급이상	난 연 성	◦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벽지 및 종이장판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한다. 벽지란 실내의 벽 천정 등에 붙이는 종이제, 섬유제, 플라스틱제 및 금속박제 등의 것으로 접착제로 붙이는 것을 말하며, 제품의 한쪽 면에 점착제가 도포되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점착 시트(인테리어 필름, 폼블럭 등)를 포함한다. 종이장판지한 온돌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관련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현행과 같음) KS M 1988 건축 내장재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3. 안전요건 3.1 벽지 3.1.1 벽지는 표 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table><tr><th>항 목</th><th>규 정</th></tr><tr><td>폼알데하이드방출량</td><td>2mg/L이하</td></tr><tr><td rowspan="2">유해원소 함유량</td><td>총 납(Pb) 100mg/kg이하</td></tr><tr><td>총 카드뮴(Cd) 75mg/kg이하</td></tr><tr><td>총휘발성유기화합물</td><td>4mg/m³이하</td></tr><tr><td>내황화성</td><td>4급이상</td></tr><tr><td>난 연 성</td><td>◦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td></tr><tr><td>프탈레이트 가소제</td><td>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td></tr></table> 비 고 1.~6.(현행과 같음) 7. 페인트 및 표면코팅의 경우 90 mg/kg 이하로 적용한다. 3.2 장판지(현행과 같음) 4. 시험방법 4.1 벽 지 4.1.1 시험의 일반조건~4.1.5 프탈레이트 가소제 시험방법(현행과 같음) 4.1.6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 4.1.6.1 총 납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7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 4.1.7.1 총 카드뮴 함유량 시험방법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부록 A, B에 따른다. 4.1.8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방법 4.1.8.1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시험방법은 KS M 1988에 따른다. 다만, 소형챔버법에서 시험용 챔버 공기 농도의 측정은 시험 시작 7일(168 시간 ± 2 시간)째에 포집하여 실시한다. 4.2 장판지(현행과 같음) 5. 검사방법~6. 표시(현행과 같음)	항 목	규 정	폼알데하이드방출량	2mg/L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100mg/kg이하	총 카드뮴(Cd) 75mg/kg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mg/m³이하	내황화성	4급이상	난 연 성	◦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
항 목	규 정																											
폼알데하이드방출량 (mg/l)	2이하																											
<신 설>	<신 설> . . .																											
내황화성	4급이상																											
난 연 성	◦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																											
항 목	규 정																											
폼알데하이드방출량	2mg/L이하																											
유해원소 함유량	총 납(Pb) 100mg/kg이하																											
	총 카드뮴(Cd) 75mg/kg이하																											
총휘발성유기화합물	4mg/m³이하																											
내황화성	4급이상																											
난 연 성	◦잔염시간3초이내 ◦잔전시간5초이내 ◦탄화면적 30㎠이내 ◦탄화길이 20cm이내 ◦접염횟수 3회이상																											
프탈레이트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1%이하																											